영향평가 요약본 비공개 사유서

○ 사업명 :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

○ 사업기간 : 2025. 6. 23. ~ 10. 23.

○ 수행업체 : (주)지티시큐

○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개여부 : **비공개**

○ 비공개 사유

-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거 **비공개 대상 정보**이므로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

- 관련 규정

[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]
제12조의2(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.

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중략>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